



교육부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2.0 기본계획

2024. 1.

교 육 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차 례



I . 추진 배경	1
II . 사업성과 및 개선사항	2
III . 사업 비전	4
IV . 사업 추진계획	5
1. 기본 방향	5
2. 사업 개요	6
3. 세부 사업내용	7
4. 선정 방안	11
5. 성과관리	15
V . 사업 추진체계 및 관리방안	17
VI . 향후 추진일정	20
【붙임1】 신산업 분야	21
【붙임2】 연차평가 지표(안)	23
【붙임3】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24

I. 추진 배경

□ 산업변화가 반영된 인재양성 필요성 지속 확대

- 산업계가 신산업으로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술 등에 특화된 인재양성 확대 및 산업현장 투입 절실
 - ※ 5대 유망 신산업분야 현원 : ('20) 약 24만명 → ('30) 약 38만명 전망(산자부, 2022)
- 신산업 분야의 인력부족, 미스매치 문제 해소를 위해 전문대학을 통한 현장맞춤형 신산업 전문기술인재 양성 확대 필요

□ 1주기 사업을 통한 신산업 전문기술인재 양성 지원

-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전문대학 14개교를 선정하여 신산업분야 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하고, 산업변화에 부합하는 전문기술인재 양성 지원
 - ※ '21년에 12교를 선정하여 3년간 지원, '23년에 반도체 분야 2교를 추가 선정하여 1년간 지원
 - ※ 지역·분야별로 균형있는 신산업 인재양성 지원을 위해, 수도권·비수도권에서 다양한 신산업 분야 학과 선정

□ 2주기 사업추진을 통해 산업변화에 부합하는 인재양성 지속

-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 다수 접수
 - ※ '23년 전문대교협 주관 전문대학 총장 세미나 건의사항('23.6.22.) 등
- 기존 사업성과의 지속 발전을 지원하고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신산업 인재 양성이 효율화되도록 사업 개선 필요

☞ 기존 1주기 사업을 통한 인재양성 성과들의 지속적인 발전과 정책환경 변화 및 개선사항을 반영한 2주기 사업 추진 필요

II. 사업성과 및 개선사항

□ 그간의 성과

- **(학과 신설·개편)** 신산업 분야 학과 신설·변경·융합 전공 개설 등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한 전문대학의 학과 구조조정 실시

※ 학과신설(3교), 전공융합(4교), 학과 변경(2교) 등 9개교에서 학과 개편 및 2교 정원 증원

- ◆ **(사례1: 인공지능(동양미래대))** 인공지능소프트웨어학과를 신설하고, 입학정원 증원 및 대학의 학과 구조를 신산업 기반으로 개편 등 사업성과의 학내 확산 추진
- ◆ **(사례2: 미래자동차(동서울대))** 전자공학과(자율주행 모빌리티 융합전공) 주관 및 전기 정보제어학과, 기계자동차공학과, 컴퓨터정보과 등 다양한 학과의 참여를 통한 전공융합

- **(교육과정 운영)** 수요조사를 통해 현장 친화적 교육과정 설계, 혁신적 교수학습법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신산업 분야 역량 함양 지원

※ 교과목 개발·개편 : 424건 이상

※ 산학공동과정·단기직무과정 개발 운영 : 62건 이상

※ 학습콘텐츠 개발(온라인, 교재 등) : 196건 이상

- ◆ **(사례1: 스마트팜(연암대))** 현장 문제해결 역량 강화를 위해 AD(Adventure Design), 과제형 현장실습, 캡스톤 디자인을 포함한 스마트팜 리빙랩 교육시스템 구축·운영
- ◆ **(사례2: 반도체(오산대))** 시제품 제작 프로젝트를 통해 반도체 공정 간 웨이퍼 이송 장치를 제작하여 학생의 현장 매칭형 기술 체화 및 기업의 채용 연계
- ◆ **(사례3: 반도체(조선이공대))** ①BATC 인증센터 지정, ②두산로보틱스 위탁교육기관 인증, ③SMSCP 인증 과정 운영 기관 등 공인 교육과정 운영

- **(교원 역량 강화)** 신산업 분야에 걸맞는 교원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교원 확보 및 연수 확대, 학칙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등 추진

※ 신산업 전임·산업체 경력 교원의 강의 담당률 상승 : ('21) 57.8% → ('22) 72.6% (25.6%↑)

- ◆ **(사례1: 맞춤형 헬스케어(대구보건대))** 교수자의 경력 및 교수역량에 따라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지원
- ◆ **(사례2: 친환경·스마트선박(울산과학대))** 교원업적평가 규정 개정, 교원 지원 매뉴얼 개발 및 역량강화 연수, 수업 컨설팅 등 신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교원 지원체계 확립

- **(교육환경 구축)** 신산업 교육성과 제고를 위해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신산업분야 인력양성 기반 구축

※ 신산업 교육장비의 수업연계 활용도 제고 : ('21)80.9% → ('22)190.0% (134.9%↑)

- ◆ **(사례1: 반도체(경남정보대))** 반도체 장비 요소기술 실습실 및 실습장비 구축, 현장실무 중심의 기자재 도입(32건)을 통한 로봇 실습실 구축 등
- ◆ **(사례2: 바이오 헬스(유한대))** 바이오공정 실습실 구축, 종합기기 분석실습실 개선, 바이오 의약품 생산교육 기자재 구매 등 교육환경 구축

- **(사업 성과 확산 및 공유·협력)** 참여대학 내·외 교육과정 운영 및 공유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신산업 인재양성 성과 확산

- ◆ **(사례1: 반도체(대림대))** 지역 내 특성화고, 전문대학 및 재직자 대상 교육, 경기도 미래 기술학교 반도체 인력 교육, 고용노동부 특성화고 연계 교육 지원 등 반도체 인재양성 확산
- ◆ **(사례2)** 유사 신산업분야 참여대학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공유협업

- **(산·학·연·관 협력)** 지역사회·산업체·교육청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 거버넌스를 운영하여 교육자원을 공유하고, 기술지원 등 산학협력 모델 발굴 및 확산을 통한 사업 효과성 제고

- ◆ **(사례1: 미래자동차(영남이공대))** 캠퍼스 내 메르세데스-벤츠서비스센터 최초 유치로 통해 전기·자율주행 분야 산학협력프로그램 공동운영 등 인재양성체계 구축
- ◆ **(사례2: 미래자동차(전남과학대))** 지역사회 내 고등학교, 대학과 교류하여 사업성과를 확산하였으며, 산업체와의 교류를 통해서 취업률 10% 상향
- ◆ **(사례3: AR·VR(청강문화산업대))** 산학협력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도, 산학공동기술개발, 재직자 재교육, 산업체 특강 등 운영
- ◆ **(사례4: 혁신신약(안동과학대))** 산업체 현장수업 운영, 협력 산업체 계절제 현장실습 및 채용 연계 학기제 현장실습 운영 등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안동시 일자리 사업 지원

□ 사업개선 고려사항

- **(신산업분야 개편)** 신산업 분야가 5분야 28세부기술로 개정되어, 이를 고려한 신산업 분야 확대 지원 필요

※ 관련 규정 : 첨단(신기술)분야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별표 1]

- **(1주기 사업성과 확대·발전)** 1주기 사업을 통한 신산업 인력양성과 취·창업이 연계되도록 계속지원 추진

※ 기존의 지원을 통해 기본적인 교육여건이 구성된 점을 고려하여 지원 규모 조정

- **(유관기관 연계·협력 확대)** 기능대학(폴리텍)과의 상호 연계·협력을 통해 교육인프라를 효율적 활용 도모

- **(규제 완화)** 기존 사업참여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활한 사업 운영 및 사업성과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필요

※ (주요 의견) 사업비를 교비회계로 집행할 때 예산사항 변경에 절차적 어려움이 있어, 산단회계로도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완화 필요('23.12.7.,사업단장 협의회)

Ⅲ. 사업 비전

□ 사업 비전도

비전	신산업 변화를 주도하는 우수 전문기술인재 양성
----	---------------------------



목적	신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혁신을 통해 전문대학의 신산업 분야 인재양성 기반 구축
----	--



추진 전략	• 대학의 특화 신산업분야 설정 및 교육과정 혁신 • 특화 신산업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 고도화 • 유관기관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신산업 인재양성 내실화
-------	--



세부 사업 유형	(1) 신규진입형	(2) 고도화형	(3) 폴리텍 연계형
	• 내실있는 신산업 교육과정 구성 • 신산업 교육에 적합한 교수학습법 적용 • 신산업분야 기초교육환경 구축	• 신산업 분야 학과 지속운동을 통한 사업성과 계속 창출 · 발전 • 신산업 교육을 이수한 졸업생의 취 · 창업 지원 • 신산업 교육 성과 공유 · 확산	• 전문대학-폴리텍 교육과정 교류를 통한 학생 지원 • 고등직업교육자원 공동활용 • 학생 역량강화 지원

IV. 사업 추진계획

1

기본 방향

- 신규대학 선정을 통한 전문대학의 신산업 인재 양성 확대
- 1주기 사업을 통해 기 지원받은 대학이 우수한 사업성과를 지속 운영하고 계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계속지원 추진
- 기존의 전문대학 단독형 뿐만 아니라, 폴리텍과 연계·협력하는 유형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전문기술인재 양성 지원
 - ※ 단, 사업 신청 및 사업비 교부·집행은 전문대학에서 추진
- 산단회계를 통한 사업비 집행 효율화 지원
 - ※ 기존에는 사업비를 교비회계로 집행하도록 하였으나, 유연한 사업비 집행을 지원 하기 위해 대학 여건에 따라 산단회계 선택 가능

[1주기 대비 사업 개선 비교]

	1주기	2주기
신산업 분류기준	21개 분야	5대 분야(28 세부기술)로 포괄·확대 적용
사업 유형	전문대학 신규진입형 (단독유형)	①신규 진입형(8교, 교당 10억원) - 사업에 새롭게 진입하는 대학에 신산업 인재양성 기반조성 지원 ②고도화형(5교, 교당 4억원) - 기존사업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양성된 신산업 인력의 취·창업 지원 및 사업성과 확산·공유 ③폴리텍 연계형(4교, 교당 10억원) - 전문대학과 폴리텍의 기관간 MOU 체결을 통한 신산업인재 공동양성 추진
사업비 교부·집행	교비회계로 한정	대학별 여건에 따라 ①교비회계 또는 ②산단회계 중 택일할 수 있도록 개선

2

사업 개요

○ (사업 유형) 3가지 유형으로 다변화

※ (1·2유형) 전문대학 단독 참여형, (3유형) 전문대학-폴리텍 연계·협력형

- (1유형 : 신규 진입형) 학과 개편, 교육과정 개편, 핵심 교육장비 구축 등 사업 신규 진입 대학 등을 대상으로 신산업분야 학과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유형
- (2유형 : 고도화형) 신산업 인재양성 기반이 구축된 1주기 사업 지원대학의 지속적인 학과 운영과 사업성과의 발전, 확산을 지원하는 유형
- (3유형 : 폴리텍 연계형) 전문대학과 폴리텍이 보유한 고등직업 교육 자원 활용을 효율화하고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전문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유형

※ 전문대학과 폴리텍이 연계·협력을 위한 MOU를 기반으로 사업에 참여하되, 전문대학이 주체가 되어 사업 참여 및 사업비 지원

[현행] 단일 유형	[개편] 1유형(신규형) · 2유형(고도화형)
전문대학 학부·학과·전공을 통해 신산업 변화를 주도하는 우수 전문기술인재 양성	전문대학 단독으로 신산업분야 인재 양성
	- 신규형(8교) : 신산업 인재양성 기반 조성
	- 고도화형(5교) : 신산업 인재양성 성과 발전·확산
	3유형: 폴리텍 연계형(4교)
	폴리텍과 연계·협력하여 학점교류, 자격과정 이수 교류 등을 통한 신산업분야 인재 공동양성

○ (지원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 (지원기간) '24.3~'27.2 (3년간)

○ (사업비 지원) 142억원('24년 기준, 사업관리비 2억원 포함)

- (유형별 지원단가) 1·3유형 교당 10억원, 2유형 교당 4억원

유형별 공통 추진사항

□ 각 대학별 특화 신산업분야 설정 및 교육과정 혁신

❖ 대학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하여 특화 신산업분야를 설정하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新교육과정 개발·개편**

- (특화분야 선정) 학과특성, 지역 특화 신산업, 인근 산업체 특성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각 대학별 특화 신산업분야 선정
 - 해당 신산업분야 직무역량 분석, 유관 산업계 희망 역량분석 등을 토대로 신산업분야 학과(전공 등) 인재상 설정 및 운영계획 수립
 - 단일 또는 유관학과(융합전공 등 포함)가 참여하며, 신산업 학과 신설 예정인 경우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제시
 - ※ 융합전공·연계전공 등을 운영하는 경우 주관학과 및 참여학과 설정
- (교육과정 개발·운영) 신산업분야 교육을 위한 신규 교육과정 개발 또는 기존 교육과정 재구조화 및 고도화 추진
 - 특히, 사업참여학과 학생뿐만 아니라 타 전공 학생 중 희망학생에게도 신산업 교육기회 부여(융합전공 이수, 전과, 이중·복수전공 등)
 - 지역 특화전략분야 등과 연계하여 해당 신산업분야 산업동향 및 산업체 요구를 고려한 신산업분야 특화 교육과정 편성·운영

□ 신산업 변화에 부합하는 교육효과 제고

❖ 신산업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법 개발·적용, 산업변화를 고려한 교원 역량강화, 학사운영 유연화로 교육효과 제고 지원 확대

- (교수학습법 개발·적용) 신산업분야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교수 학습방법을 개발 또는 적용하여 교육과정 운영효과 제고

- **(교원역량 강화)** 특화 신산업분야 관련 교원 교수역량 강화, 유관 산업계 경력자 교원채용 등을 통해 교수기반 마련·운영
 - 대학-산업계 현장전문가 공동교육, 유관분야 산업체 경험 교원 채용 등 현장변화에 따른 신산업 동향을 반영한 교수환경 조성
 - 신산업 관련 교육혁신에 참여하는 교원 역량 강화방안 및 대학 자체적인 지원 방안 설계 등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 ※ (예시) 교육과정 개발성과 교원업적평가 반영, 유관분야 교육·연수 등
- **(학사운영 유연화)** 다학기제, 유연학기제, 집중이수제 등 유연한 학사제도를 활용하여 신산업 특성을 반영한 교육기반 조성

□ 특화 신산업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운영

❖ 특화분야 교육성과 제고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및 신산업분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 기반 조성**

- **(교육환경구축·운영)** 특화 신산업분야 관련 최신 실험실습장비, 각종 설비 등 신산업분야 기초교육환경 구축·운영
 - ※ 특히, 1차년도에는 교육환경개선 집중 투자로 고도화된 교육환경 조기 구축
 - 산학공동 교육환경 조성, 현장미러형 실습환경 조성, 신규 기자재 구축 등 산업현장 변화를 고려한 교육환경 조성·운영
- **(전담조직 운영)** 신산업 교육, 진로지도와 산업계 연계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되, 유관 산업계 관계자 포함
- **(산업계 연계 강화)** 신산업분야 교육과정 개발·운영·환류 시 유관 산업계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성 제고
 - 유관 산업체 집중실습 등 현장 친화적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위한 신산업 분야 산학협력 교육과정 및 체계 구축
 - ※ 애로기술지원 협업 강화, 신산업 분야 우수 산학협력모델 발굴·확산 등

유형별 별도 추진사항

□ 1유형

- (학과 개편) 학과신설, 전공융합, 학과 변경, 정원 증원 등의 방안을 통한 신산업학과 관련 개편 또는 확대 계획 포함
 - ※ (학과 신설) 신산업 분야 학과를 새롭게 신설하여 운영
 - ※ (전공 융합) 신산업 분야에 관련된 다양한 학과의 커리큘럼을 결합하여 융합전공 개설
 - ※ (학과 변경) 기존 학과 체제를 신산업 분야 학과로 전공을 변경하여 운영

□ 2유형

- (학과 운영 계속지원) 신산업 관련 학과를 계속적으로 운영하여, 사업성과 지속 및 발전 추진
 - 2유형은 기존 사업성과를 기반(교육과정 개발, 교육환경 구축 등)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여, 공통 추진사항은 운영 측면으로 간소화 가능
- (학생 취·창업 지원) 진로지도, 산업체 매칭 등 신산업분야 학과 졸업생들의 역량과 전공에 부합하는 취·창업 지원
 - 특화 신산업 관련 대학 내 전담조직 등을 통해 산업변화를 고려한 학생진로지도, 취·창업 연계 지원
- (사업성과 공유·확산) 지역사회, 산업체 등 유관기관 및 타 전문 대학 등을 대상으로 누적 사업성과 공유·확산 지원

□ 3유형

【1. 기관 간 상호협력 기반 조성】

- 전문대학-폴리텍의 안정적인 협력 체계가 구축되도록 기관 간 MOU를 체결하고, 연계·협력 기반 조성

【2.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교류】

- (교육과정 개발) 전문대학-폴리텍의 교육시설을 통해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하여 적용
 - ※ 교육과정 설계 시, 각 기관별로 보유한 교육자원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역량과 기존 보유 교육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설계
- 정규학기·방학 중 학생들이 교류하여 학점 또는 자격취득 과정 등을 이수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의하여 교육과정 운영
- (교육과정 교류) 전문대학 및 폴리텍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상호 교류하여, 학생들의 상호 학점교류, 자격과정 이수 등 지원
 - 상호 교류하는 학생들이 기존 소속 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 외에 별도의 비용 등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약 등 제도 마련
 - 기관 간 교육과정을 교류하고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학칙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병행 필요

【3. 고등직업교육자원 공동 활용】

- (교원) 교원들의 현장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공 연수, 산업체 연수 등 재교육·연수와 기관 간 교원의 상호 교류·소통 지원
- (교육시설) 교육시설 등 다양한 고등직업교육자원 활용도 제고
 - (교육시설 공동활용) 신산업분야 교육에 필요한 기기·장비를 공동 활용하여, 고등직업교육자원 운영 활용도·효과성 제고
 - (신규장비 도입) 산업 발전속도를 고려하여 추가 구비가 필요한 교육장비를 전문대학에 도입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효과성 제고

□ 기본 방향

- 신산업 분야의 지속적인 전문기술인력 양성 등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사업수행 의지·역량 우수 대학 우선 지원
- 신산업 분야의 다양성,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선정 불가
- 유형별 선정규모는 1유형 8교, 2유형 5교, 3유형 4교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 유형에서 선정미달 시, 타 유형에서 추가 선발 가능

□ 신청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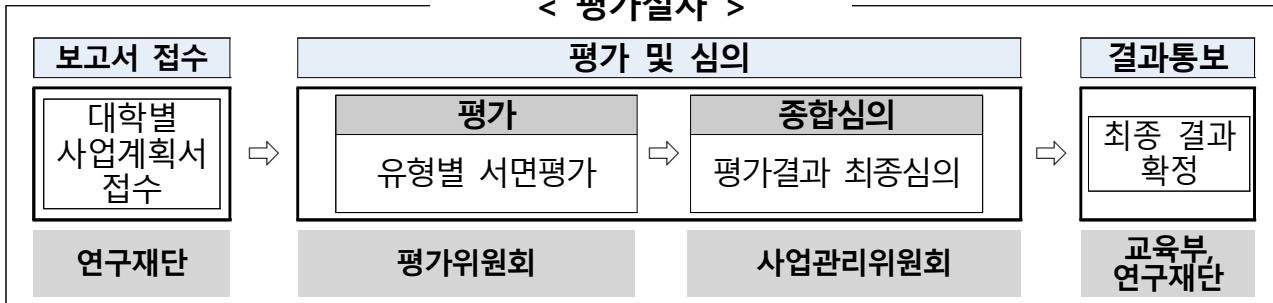
- (신청 대상 및 단위)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가능 전문대학에 대하여, 각 대학별 1개 유형에 대하여 신청 및 지원 가능
 - ※ 신산업분야는 [붙임1]의 세부기술을 기준으로 하며, 각 대학에서 세부 특화분야 제시 가능
- 다만, 기존 신산업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 및 전문대학의 학과 구조조정 지원 확대를 고려하여 '21년 선정 대학(12교)은 동일 신산업 분야 2유형 또는 타 신산업분야 3유형으로만 신청 가능
 - ※ '23년 선정 대학(2교)는 단년도 지원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기존과 동일한 신산업 분야에 대하여 1유형도 신청 가능
- 3유형 신청 시, 학점교류를 고려하여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폴리텍과의 MOU 체결을 통한 사업 신청 및 참여가 가능
- (지원방법) 지원 희망대학은 ①사전신청서를 제출하고, ②사업추진을 위한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사업계획서」 후속 제출
 - ※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사업계획서 양식 안내 및 제출 가능

□ 평가 추진 방안

- (평가 방법) 신청대학의 사업 추진목표, 사업 추진계획, 성과관리 계획에 대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에 서면·정성평가 실시
 - ※ 필요 시 최종선정을 위해 대면평가, 현장방문 또는 추가 자료제출 요구 가능

- (평가위원) 학계·산업계·연구계 등 전문성이 높고 공정한 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자로 선정하고, 상피제 적용으로 평가 신뢰도 제고
- ※ 폴리텍과 연계·협력하는 3유형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추천을 받은 평가위원 참여 가능

< 평가절차 >



□ 고려사항

- (1유형) 수도권·지방을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지역별·신산업 분야별 균형있는 선발을 추진하되, 과락대학(평가점수 70점 미만)이 있는 경우 선정대학 수 조정 가능

< 지역별 선정(예정) 대학(안) >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계
선정(예정) 대학 수	2~3개교 내외	5~6개교 내외	8개교

- (2유형) 신산업 5대 분야별 1교 선정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계획의 우수성을 고려하여 분야별 선정 대학 수 조정 가능

□ 선정평가 내용 및 지표

- (기본 방향) ①사업추진목표, ②사업 추진계획, ③사업 추진체계 및 성과관리 계획, ④재정집행 계획을 중심으로 평가 추진
- 특화 신산업분야 선정의 타당성, 해당 신산업분야 관련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계획, 산업계 수요분석 및 연계 정도 등 사업추진 가능성 및 우수성과 도출을 통한 기대효과 중심으로 평가
- ※ 사업 유형별 평가지표는 일부 상이하며, 유형별 평가지표 상세는 이하 참조

○ 1유형(신규 진입형)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 지표	배점
1. 사업추진목표 (20)	1.1. 대학의 여건 및 특화 신산업분야 선정의 적절성	8
	1.2. 사업추진목표 및 인재상의 타당성	7
	1.3. 대학의 역량 및 사업수행 의지 정도	5
2. 사업추진계획 (50)	2.1. 신산업분야 학과(또는 (융합)전공 등) 개편 및 운영체제 구축의 적절성	15
	2.2. 교육과정 개발·운영계획의 우수성	15
	2.3. 교육효과 제고 계획의 적절성	10
	2.4. 학생지원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및 산·학·연·관 연계계획의 우수성	10
3. 사업추진체계 및 성과관리계획 (20)	3.1.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5
	3.2. 성과지표 설정 및 달성계획의 적절성	8
	3.3. 성과관리·확산의 적절성 및 지속가능성	7
4. 재정집행계획 (10)	4.1. 재정집행계획의 적절성	10
합 계		100

○ 2유형(고도화형) 평가지표

평가 영역	평가 지표	배점
1. 1주기 사업 추진성과 (40)	1.1. 1주기 사업 종합평가 결과	40
2. 2주기 사업 추진계획 (40)	2.1. 1주기 사업성과와 연계한 2주기 고도화 계획의 구체성 및 우수성	20
	2.2. 신산업분야 학과·전공 운영계획의 우수성	10
	2.3. 신산업분야 학과·전공 학생 지원계획의 우수성	10
3. 성과관리계획 (15)	3.1. 성과지표 설정 및 달성계획의 적절성	10
	3.2. 성과관리·확산의 적절성 및 지속가능성	5
4. 재정집행계획 (5)	4.1. 재정집행계획의 적절성	5
합 계		100

○ 3유형(폴리텍 연계형)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 지표	배점
1. 폴리텍과의 연계·협력(30)	1.1 전문대학-폴리텍 간 MOU체결을 통한 연계·협력 체계 구축 및 제도 완비 또는 개선계획	10
	1.2. 폴리텍과의 교류 계획을 포함한 교육과정 개발·운영계획의 우수성	10
	1.3. 대학 및 폴리텍의 여건 및 특화 신산업분야 선정의 적절성	10
2. 사업추진목표 (10)	2.1. 사업추진목표 및 인재상의 타당성	5
	2.2. 대학의 역량 및 사업수행 의지 정도	5
3. 사업추진계획 (30)	3.1. 신산업분야 학과(또는 (융합)전공 등) 운영체제 구축의 적절성	10
	3.2. 교육효과 제고 계획의 적절성	10
	3.3. 학생지원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및 산·학·연·관 연계계획의 우수성	10
4. 사업추진체계 및 성과관리계획 (20)	4.1.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5
	4.2. 성과지표 설정 및 달성계획의 적절성	8
	4.3. 성과관리·확산의 적절성 및 지속가능성	7
5. 재정집행계획 (10)	5.1. 재정집행계획의 적절성	10
합 계		100

□ 성과평가

- (기본방향) 성과지표 달성 여부, 당초 계획의 이행실적, 사업관리·운영을 종합 고려하여, 각 대학의 사업 추진성과 평가
 - (연차평가) 핵심·자율성과지표 달성과 사업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점검·평가하고,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사업계획 수정 보완 자문
 - ※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25년 이후 사업비 차등 지급 등 연계 가능
 - ※ 유형별 상세지표는 [붙임 2] 참조
 - (종합평가)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추진 성과에 대해 종합평가
 - ※ 사업 3차년도에는 3년간의 성과에 대한 종합평가로 연차평가 대체

□ 자율 성과관리

- (성과지표 설정)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지표를 대학 공통 핵심성과지표와 각 대학별 자율성과지표로 구분하여 제시
 - ※ 대학의 현재 값을 기준으로 여건에 따라 합리적인 목표 수준을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매년 목표 달성여부 확인

구분	지표
핵심 성과지표	1. 신산업분야 교육과정 개발·운영 성과
	2. 신산업분야 교육과정 이수율
	3. 신산업 관련 전임 및 산업체 경력 교원의 강의담당률
	4. 신산업 관련 구축장비의 수업연계 및 활용률
	5. 참여학생 및 유관기관 만족도
	6. (3유형 추가 지표) 전문대학-폴리텍 간 교육과정 교류 수준
자율 성과지표	대학별로 사업목표와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율 설정하고 (5개 이내) 달성도 중심의 평가 실시 ※ 학과운영체제구축, 교육과정 운영성과(PBL, 현장실습 등), 학생 유관분야 취업률, 산학연관 거버넌스 운영성과 등

- ※ 학생·교원은 참여학과(융합전공의 경우 주관학과 및 참여학과), 참여학과 외 학생·교원으로 구분하고, 성과관리 시 기준으로 활용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사업목표의 효과적 달성여부 점검을 위해 각 대학에서 연 1회 이상 자체평가 및 환류
※ 산업체 인사 등 외부위원을 50% 이상 구성하여 운영

□ 컨설팅단 구성 · 운영

- **(컨설팅 방향)** 사업 수행대학의 사업계획 타당성, 성과지표 및 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사업계획 수정·보완 자문**
※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해당 신산업 분야를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 추진
※ 3유형 컨설팅은 고용노동부 추천 위원을 포함하여 추진 가능
- **(컨설팅 결과 반영)** 각 대학은 컨설팅단의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수정·보완 추진
 - 계획서 내용이 매우 부실하거나 타당한 사유 없이 컨설팅 결과에 따른 수정·보완 권고 사항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계획 수정 시까지 지원금 교부 시기 조정 등 가능

□ 우수모델 발굴 및 성과 공유 ·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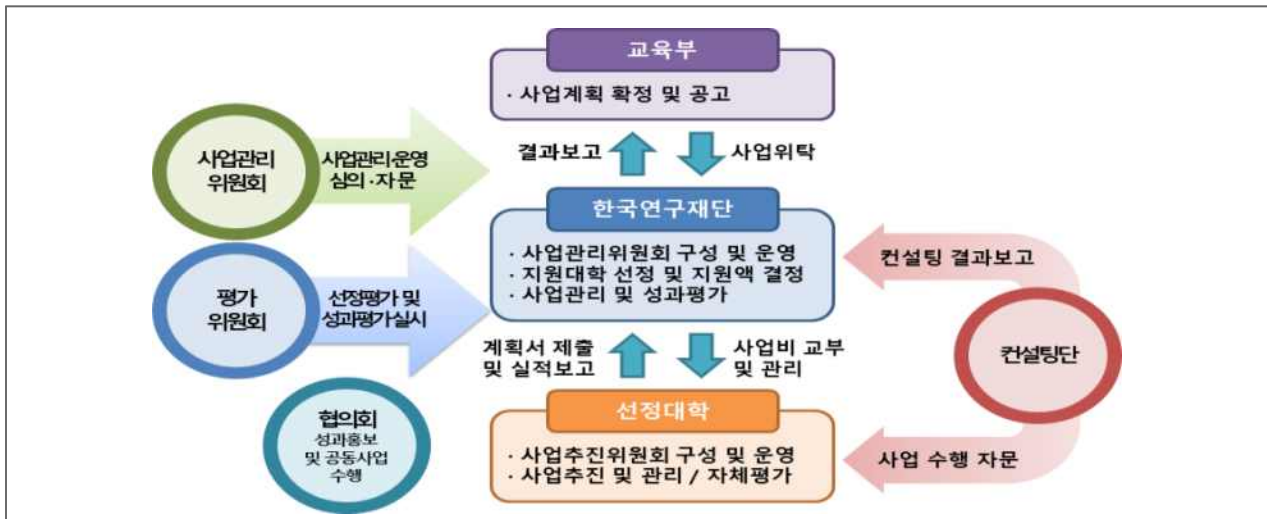
- **(사업계획 공개)** 각 대학의 사업계획을 대학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 신산업 교육 모델 확산 지원
- **(우수성과 공유)** 사업수행 대학 간 협의체 주도의 워크숍·포럼 등으로 사업계획, 성과점검 결과 및 우수사례 등 주요성과 공유·확산

V. 사업 추진체계 및 관리방안

1

사업추진체계 및 역할

□ 사업 추진 체계



□ 사업주체별 역할

- (교육부) 사업 기본계획 수립·공고 등 사업 총괄
- (한국연구재단) 사업 관리·운영 위탁에 따른 사업 수행
 - 연차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지원금 교부 등 사업비 집행·관리, 성과평가 시행, 성과분석 및 컨설팅 등 수행
- (사업관리위원회)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자문, 지원 대학 선정 및 지원액 확정, 평가 및 사업관리 점검 등 사업 관련 주요사항 심의
- (각 대학)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및 실적보고,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모델 구축·운영
- (협의회) 사업 발전방안 및 연계·협력 방안 논의, 성과 확산·홍보
 - ※ 연도별 사업 기간 종료 후 운영 실적 등 전문기관으로 별도 보고

□ 관련 규정

-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23.9.)

□ 사업수행 주체

- 사업수행 대학은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의 장과 **사업추진 협약 체결**
 - 사업수행계획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대학이 달성해야 하는 주요 성과, 의무 이행사항 및 불이행시 조치사항, 사업비 등 포함
 - 대학은 체계적 사업 추진을 위해 대학혁신위원회 직속 '**사업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계획 수립, 세부 집행지침 마련,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사업 시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성과관리 등 수행
 - 사업 총괄책임자는 주관학과 학과장 등 소속교원 중에서 **총장이 선임하는 사람**으로 하되, 사업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
- * 단,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후 변경 가능

□ 사업비 편성 및 집행

- 지원금은 대학에 **총액(Block Grant)**으로 교부하며, 대학은 **교비회계 또는 산단회계**(대학이 택일) 내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사업비 관리
 - ※ 사업관리를 위해 별도의 전담조직이나 부서 설치 또는 지정
- 사업비는 **사업계획에 부합하도록 집행**하되, 교육부 및 전문기관에서 규정한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따라 편성·집행
 - 사업과 연계한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는 3년 사업비 총액의 최대 40% (연도별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하며, 연도별 예산 변경·확정에 따라 초과되는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는 대학 자체 부담
 - 건물 신축·증축·개축, 기존 교직원 급여 및 정기적 수당 지급 불가
- 사업수행 대학은 협약 체결 후 사업비 교부 전에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사업개시일 이후부터 사업비 교부 전 자체재원으로 선 집행한 예산은 사업비 교부 후 대체 처리 가능
 - 사업 종료시점 등을 고려, 국고지원금은 '24. 10월까지 60% 이상 집행 권장

□ 국고 지원금 관리 및 책무성 확보

- 사업 관련 부정·비리 등에 대한 지원 제한은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23.7월 개정)'에 따름
 - ※ 추후 개정 시 개정 매뉴얼에 따름
-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상 제재사안(부정·비리 등) 발생 즉시 교육부·한국연구재단에 제출
- 성과지표 등 지표값의 오류(단순 오류, 허위 등)가 발견되는 경우,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정된 지표 값의 성질 및 정도에 따라 지원금 조정 또는 지원 중단 조치 가능
- 사업 기간 중 대학의 귀책사유에 따른 지원금 삭감 등이 있는 경우 당초 협약한 사업계획 이행 소요 비용은 대학 자체 부담
-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 등은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원칙으로 사업비 절감 및 국고지원금 집행 투명성 확보

□ 정산 및 결과 보고

- 연간 사업 종료 후 연차평가 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 결과보고서 제출
- 국고집행 책무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은 사업비 집행실태 점검

Ⅵ. 향후 추진일정

-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2주기 사업 선정 공고('24.1.)
- 2주기 사업 지원대학 신청서 접수 및 선정(~'24.3.)
- 선정대학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추진('24.3.~)
-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컨설팅 추진('24.4.~)
- '25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 수정(학과 신설 대학, ~'24.4.)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붙임 1

신산업 분야

※ 첨단(신기술)분야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별표 1]

분야별 정의	세부기술(분야)	주요내용
Aerospace/Mobility (항공·우주, 미래 모빌리티) 자체 구동 동력을 가지고 공간적 이동에 의한 필요 작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시스템과 연관된 첨단 기술·산업	항공·드론	지능적 기능을 통해 자율 비행능력을 갖춘 항공기를 포함하는 무인 항공기 제조, 무인항공기와 연결하는 전자 장치 및 운용 시스템을 개발 또는 생산, 활용하는 기술과 산업
	미래자동차	그린카, 스마트카 분야의 완성차나 관련 부품의 HW/SW 제반 신기술을 개발·생산하는 제조업과 이를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 기술과 산업
	지능형로봇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지능 시스템 및 관련 기반기술을 개발 또는 생산하는 산업
	우주	인공우주물체의 설계, 제작, 발사, 운용 등에 관한 연구 활동이나 기술개발활동 또는 우주공간의 이용, 탐사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과 산업
Bio Health (바이오 헬스)	바이오헬스	생명공학 및 의·약학 지식에 기초하여 질병의 진단 치료나 예방 등 인류의 건강증진과 유지를 위한 모든 식품·의료제품 등을 제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기술과 산업으로 혁신신약, 규제과학, 유전체분석 분야 등을 포함
Component (첨단부품·소재) 첨단 기계 및 전자기기 시스템을 구성하는 부속 시스템 및 신소재·부품에 연관된 첨단기술·산업	차세대반도체	지능형 서비스 구현을 위해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능을 포함하거나 성능·소모 전력을 개선하여, 고도화 분야(자율주행차 등)나 미래 신시장 분야(실감형콘텐츠 등)에 활용되는 반도체 개발·제조와 관련된 기술과 산업
	차세대 디스플레이	응용기기 정보를 제약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크기, 해상도, 소비전력 등 성능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과 산업
	첨단신소재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간 연관효과가 큰 기초 물질을 활용하여 소재별 융·복합을 통해 성능·기능을 향상시키는 기술과 이를 활용한 산업(프리미엄소비재 분야 포함)
	이차전지	반복적인 충·방전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장치의 제조·조립, 핵심소재, 제조장비와 관련된 기술과 산업
	3D프린팅	디지털 설계·디자인 데이터를 이용하고 소재를 적층하여 3차원 물체를 제조하는 기술로, 관련 장비제조, 소재제조, SW개발, 서비스, 유통과 관련된 기술과 산업
	나노	물질을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100nm이하)에서 조작·분석하고 제어하여 새롭거나 개선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소재·소자 등을 만들어내는 기술과 이를 활용한 산업
Digital (디지털)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융합 디바이스/ 기기와 연관된 첨단기술·산업	인공지능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로, 인공지능 적용 제품·서비스·플랫폼의 생산, 유통, 활용, 부가서비스(조사/분석, 컨설팅, 중개 등) 과정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과 산업
	빅데이터	정형, 비정형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로부터 효율적으로 가치를 추출하고, 데이터의 초고속 수집, 발굴, 분석을 촉진하는 차세대 기술과 산업
	차세대통신	미래 이통통신 기술 및 서비스로 사람, 사물, 정보가 언제 어디서나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수많은 주변 디바이스와 소통하는 차세대 이동통신 관련 기술과 산업

분야별 정의	세부기술(분야)	주요내용
	사물인터넷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 지능 통신을 할 수 있는 M2M 개념을 인터넷으로 확장하여 현실과 가상세계의 모든 정보와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 네트워크, 제품기기, 서비스 관련 기술과 산업
	AR,VR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기술을 기반으로 가상의 현실에서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디바이스, SW, 콘텐츠, 응용서비스 관련 기술과 산업
	블록체인	블록이라는 소규모 데이터들이 P2P 방식을 기반으로 생성된 체인 형태의 연결고리 기반 분산 데이터 저장 환경에 저장되어 누구도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누구나 변경 결과를 열람할 수 있는 분산 컴퓨팅 기술 기반의 원장관리 기술 및 유관 산업
	사이버보안	사이버 환경에서 네트워크 운영상의 위협으로부터 조직과 사용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과 이를 활용한 산업
	양자	얽힘·중첩과 같은 양자 고유의 특성을 활용하여 기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고속연산(양자컴퓨팅), 초신뢰 보안(양자통신), 초정밀계측(양자센서)을 가능케 하는 기술 및 유관 산업
	클라우드	언제 어디서나 필요에 따라 ICT 자원, 서비스 개발환경, 응용 SW 등의 서비스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컴퓨팅방식으로 '지능적 사고'를 하는 기계, 기술과 산업
	핀테크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금융기법과 차별화된 새로운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과 이를 활용한 산업
Eco/Energy (환경·에너지) 환경·기후 기술,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연관 첨단기술·산업	에너지신산업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수요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해결형 기술과 이를 활용한 산업
	에코업	환경보전과 관리를 위한 환경시설 및 측정기기 등을 설계·제작·설치하거나 유관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술과 이를 활용한 산업
	스마트시티	도시 생활에 필요한 교통, 환경, 보안, 행정 등의 다양한 공공 서비스가 기술을 통해 구현·제공되고, 이를 위해 유무선 통신망과 통합관제센터가 운영되는 도시에 관련된 기술과 산업
	스마트건설	전통적인 건설기술에 ICT 등 첨단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건설공사의 생산성, 안전성, 품질 등을 향상시키고, 건설공사 전 단계의 디지털화, 자동화, 공장제작 등을 통해 건설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개발된 공법, 장비, 시스템 및 관련 산업
	스마트공장	제조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IoT, AI, 빅데이터와 같은 ICT 기술을 적용하여 자동화, 디지털화된 공장을 구현하여 기업의 생산성, 품질 등을 향상시키는 지능형 공장과 관련된 기술과 이를 활용한 산업
	스마트팜	농작물과 가축의 생육정보와 환경정보 등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농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점검하고, 적기 처방을 함으로써 농산물의 생산성과 품질 제고에 기여하는 기술과 이를 활용한 산업
	스마트·친환경 선박	ICT·사이버 보안 기술 또는 대기·해양 오염을 저감하는 기술을 적용하는 선박 및 유관 기자재 개발·생산과 관련된 기술과 이를 활용한 산업

붙임 2
연차평가 지표(안)

※ 추후 변경가능

☐ **[1유형) 신규진입형**

평가영역	평가지표	배점
핵심성과지표	신산업분야 교육과정 개발·운영성과	8
	신산업분야 교육과정 이수율	8
	산업체 관련 전임 및 산업체 경력 교원의 강의전담률	8
	신산업 관련 구축장비의 수업연계 및 활용률	8
	참여학생 및 유관기관 만족도	8
사업추진목표	사업추진목표 및 달성 노력	5
사업추진 실적	교육과정 개발·운영 실적 및 교육효과 제고 실적	15
	학생지원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과 산·학·연·관 연계 실적	15
사업추진체계와 성과관리 실적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자율성과지표 달성도	15
재정집행 실적	재정집행 실적의 적절성	10
합계		100

☐ **[2유형) 고도화형**

평가영역	평가지표	배점
핵심성과지표	신산업분야 교육과정 운영성과	8
	신산업분야 교육과정 이수율	8
	산업체 관련 전임 및 산업체 경력 교원의 강의전담률	8
	신산업 관련 구축장비의 수업연계 및 활용률	8
	참여학생 및 유관기관 만족도	8
사업추진 실적	교육과정 운영 실적 및 교육효과 제고 실적	15
	산·학·연·관 연계 실적 및 사업성과 공유·확산 실적	15
사업추진체계와 성과관리 실적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자율성과지표 달성도	15
취·창업 연계 실적	신산업분야 학과 졸업생의 취업률	15
합계		100

☐ **[3유형) 폴리텍 연계형**

평가영역	평가지표	배점
핵심성과지표	신산업분야 교육과정 개발·운영성과	8
	신산업분야 교육과정 이수율	8
	산업체 관련 전임 및 산업체 경력 교원의 강의전담률	8
	신산업 관련 구축장비의 수업연계 및 활용률	8
	참여학생 및 유관기관 만족도	8
	전문대학-폴리텍 간 교육과정 교류 수준	8
사업추진목표	사업추진목표 및 달성 노력	5
사업추진 실적	교육과정 개발·운영 실적 및 교육효과 제고 실적	13
	학생지원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과 산·학·연·관 연계 실적	13
사업추진체계와 성과관리 실적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자율성과지표 달성도	13
재정집행 실적	재정집행 실적의 적절성	8
합계		100

붙임 3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항목(비목)	사용용도	비고
가. 인건비	1) 교원 및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수행을 전담하는 직원 등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수행 인력의 퇴직금과 4대 보험료를 포함한 인건비 비용 2) 그 밖에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운영을 위한 조교 등 보조인력에 대한 보수	- 기존 교직원의 급여 및 정기적 수당 지급 지원 불가 (단, 사업참여 교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연도별 사업비의 2%[1인당 최대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하며 대학 자체기준 수립 후 집행)
나. 장학금	1)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에 관련된 전문학사학위과정·학사학위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학자 보조금 2)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에 관련된 석사·박사학위과정 학생 및 수료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학자 보조금 3)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에 관련된 그 밖에 성인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학자 보조금	- 대학 자체 장학금 지급 관련 규정·기준에 따라 지급 ※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장학금 집행 불가 (단순 참여 독려 장학금 등) - 한국장학재단에서 규정한 학자금 이종지원의 범위를 초과한 지원금 불가
다.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1)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비: 전공·비전공·교양 등 신규 교과목 개발, 신규 교재 개발, 신규 강의법 개발 등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비용 2) 교육·연구 프로그램 운영비: 정책연구비, 강의료, 원고료, 교육 학술활동비 또는 실험실습비 등 교육·연구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국제화 경비: 국제화를 위한 교류 경비, 국제화 프로그램 운영비 등 국외 교육·연구활동 관련 각종 경비	- 폴리텍과의 연계·협력과정에서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과제 추진에 필요한 폴리텍 교직원 연구수당 등 지원 가능 - 교직원(폴리텍 교직원 포함) 역량 강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연수 프로그램 관련 지원 가능 - 기관 간 학생 교류에 필요한 경비지원 가능
마. 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교육·연구·산학협력 목적으로 활용되는 실험·실습·시험·분석·계측·생산장비 및 기자재의 구입·리스·임차·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	- 교원의 개인연구 활동을 위한 장비·기자재 구입비 집행 불가 - 기자재 구입 시 활용방안 계획을 수립하고, 활용방안 계획서에 대한 대학 자체 기자재 구매(활용) 심의 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집행

항목(비목)	사용용도	비고
바. 기업 지원·협력 활동비	1) 산학공동 기술·지식 개발비: 산학 공동 기술·지식 개발 비용 2) 산학협력활동비: 애로기술 및 컨설팅 지원, 재직자 교육, 융·복합 기술사업화 등 기업·지역·협력기관 지원비, 산학연계 공동 세미나·포럼 추진·참가비 또는 산학협력협의체 운영비 등 산학협력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 기업에 지급되는 대가성, 현금성 비용(상품권 등) 집행 불가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사업 관련 기념품은 제공 가능하나, 대장 구비
사. 성과 활용·확산 지원비	1) 기술이전·사업화 비용: 창의적 자산 발굴 및 기획비용, 산학공동 기술·지식 사업화를 위한 시험제품 제작 및 검증 비용,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비, 사업화 분석 및 투자유치 등 기술이전 비용, 대학·협력기관 간 기술사업화 융·복합 프로그램 추진비, 학생 기술·지식 창업 프로젝트 비용 등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비용 2) 산학협력 체제 확산비: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 세미나·포럼 개최비, 위원회 수당 등 대학 체제 개편을 위한 경비, 대학 간 산학협력 체제 공유·확산을 위한 경비 등 산학협력 체제 공고화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본 사업 취지와 맞지 않거나 효과가 불투명한 일회성 행사비 집행 불가 - 폴리텍 등 외부 기관 간 연계 협력(MOU 체결, 거버넌스 구축 등) 추진 시 소요되는 비용 등 지원 가능
아.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	여비, 교육활동지원비, 도서 구입비, 일반수용비, 홍보비, 회의비, 각종 행사경비, 신규 채용인력 공개임용 시 필요 경비, 사업 총괄협의체 운영을 위한 비용 등 교육·연구·산학협력 등의 활동 수행 시 부가적으로 필요한 비용	-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과 관련 없는 외유성 출장비 등 집행 불가 - 학원 수강료, 외국어 시험 응시료 집행 불가

※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은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사업'을 말함

※ 산학협력단 회계를 선택한 대학은 사업비의 5% 범위 이내에서 간접비(교육연구단, 산학협력단 등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의 총괄 관리를 위한 경비) 편성 가능 (단, 교직원의 인센티브 성격의 수당 지급 불가)